

대구지방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나3183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나318343 판결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. 8. 8 선고 2023가단1028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

담당변호사 김민우, 김성표, 이형훈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4. 4. 18.

판결선고 2024. 5. 23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. 8. 8. 선고 2023가단1028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1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2. 12. 1. 접수 제10991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‘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1억 5,000만 원에 내어 놓았다’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,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각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아래에 다음 관련 법리를 추가한다.

『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.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,

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,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,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(대법원 2013. 10. 7.자 2013스133 결정 등 참조).』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일, 판사 손윤경, 판사 정진우

별지